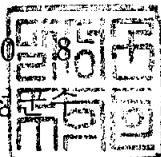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 안 번 호	034
------------	-----

제출일자 : 2010. 08. 10

제출자 : 달성군수



##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정이유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법률 제8737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1시행)에 따라 광고물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 정비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재원(안 제2조)
- 나. 기금의 용도(안 제3조)
- 다. 기금의 운용 관리(안 제4조, 제10조 ~ 제12조)
- 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5조 ~ 제9조)

## 4. 조례안 : 붙임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0. 05. 17 ~ 06. 07, 결과 : 의견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 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재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의 전입금
6. 국가나 시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군 금고에 따로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담당 실·과장, 옥외광고담당과장(당연직)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 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과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이나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